

1. 朝鮮土木事業誌 (조선토목사업지)

조선총독부 (朝鮮總督府) 에서 1937년에 발행.
한일합병 이후 (1910~1929) 1929년 말까지의
토목사업에 ^{총괄한} 기록한 1,500쪽의 분량에 대한 기록
이다. 주요 내용은 ① 조선 토목 제도의 연혁을
비롯하여 ② 도로 ③ 하천 ④ 항만 ⑤ 시
가지 정리 ⑥ 상수도 ⑦ 하수도 ⑧ 재해 복구
⑨ 복록에 관한 토목사업 관계 직원의 명

한편 ⑩ 관계 법규 등을 수록하고 있다

법규는 ① 조선 토지 수용령(令)을 비롯하여

② 조선 하천령 ③ 조선 공작수변 대령령

과 시가지 건축취제 규칙 등이

수록되어 있다 시가지 건축 취제 규칙은 조

선 시가지 계획령 (지공의 도시 계획법)이 제정

되기 이전의 ~~조선정부의~~ ^{점령국인} 도시 계획법이 라고

볼수 있다

안제 (日帝)는 1910년에 우리나라를 강

점하라 토목 (건설) 분야에 있어 가장 먼저 제정한

16

과

것이 1911년의 조선 토지 수용령(朝鮮土地
 收用令)이 있다. 조선 총독부가 토지 수용령
 령이 다급하게 된 이후는 첫째 군(軍)의 주
 도에 필요한 군용지와 둘째 특별사업 예정지
 의 강제 매수가 ~~필요~~^{시급}했기 때문이다.
 당시의 토지 수용령(令)은 지금의 법(法)
 이다. 당시 양제는 조선 총독에게 ~~권~~^권령
 권(制令權)과 예산 편성권을 부여했었다.
 제령권이란 ~~이~~ 일종의 국회 심의를 거치
 지 않고 조선 총독이 스스로 법을 만들

· 숙 있는 권 한 등 한 한 때 뒤 시 당시 의
 조 선 후 지 수 용 령 이 나 조 선 조 로 령 · 조 선
 하 천 령 만 는 조 선 시 가 지 계 화 령 등 은 · 리 준
 의 법 (法) 으 로 보 아 야 한 다

당시 의 후 지 수 용 령 은 리 준 의 후 지 수 용
 법 보 다 후 신 강 업 적 인 법 이 었 다 령 반 간
 의 퇴 퇴 지 기 간 중 우리 민족 이 법 의
 보 통 으 로 숙 많 은 사 람 들 이 후 지 를
 배 앓 기 그 사 리 히 했 다 그 악 명 이 일 마 나
 보 앓 린 지 해 방 된 지 50 년 이 지 나 후 지 금

16

16

의 미 나 는 신 물 특 은 1000 지 책 에 등 기
 수 용 량 비 율 등 이 관 력 많 은 소 고 있 다
 또 한 이 책 에 는 1910 년 에 서 1928 ~~년~~ ^년 까 지 서
 물 의 물 가 와 노 임 지 수 (勞賃指數) 등 월 별 른
 기 록 하 고 있 다
 한 편 이 책 에 는 1912 년 에 서 1928 년 까 지
 의 전 국 10 대 도시 즉 서울 인천 평 양
 부산 대구 진 남 포 목 포 군 산 북 산 및
 청 진 에 대 한 노 임 통 계 가 실 려 있 다
 이 례 태 면 1912 년 서울 ^에의 경우 목 수

의 경우 일본인 ~~78~~ ¹⁰⁰ 50전 (1円 50銭) 인데 반
 하여 조선인은 1원 (1円) 이었고 일본인부는
 일본인 78전 인데 비하여 조선인은 42전
 이었다.

이 밖에도 이 책에는 1910년 부터 1929년 까지
 의 빈민조사 기록 사업에 지출내역이 기록
 되어 있다.